제1쪼~제12쪼 정의 및 납에지 등 총칙

8

제1조의 요약

- ○내국법인: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
- ○외국법인: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(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법인이라 함)
- ○비영리내국법인: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 설립법인, 사립학교법·특별법상 법인,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(법인으로 보는 단체)
- ○비영리외국법인: 외국의 정부,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, 법인으로 보는 단체
- ○사업연도: 법인의 소득을 구분 계산하는 1회계기간(일반적으로 만 1년임)
- ○연결납세방식:둘 이상의 내국법인의 손익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는 방식
- 연결법인 및 연결집단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으로 연결법인 전체를 연결집단 이라 함.
- ○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: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법인을 연결모 법인이라하고, 연결모법인의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 함.
- 연결사업연도: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

A

제2조의 요약

- ○내국법인: 수익사업ㆍ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
- ○외국법인: 수익사업·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
- ○내국비영리법인: 수익사업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
- ○외국비영리법인:수익사업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
- ○내국법인·외국법인:국내부동산의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
- ○국가·지방자치단체·지방자치단체조합: 법인세 과세안됨.
- ○법인세 원천징수분 세금의 납세의무: 내국법인, 외국법인, 소득세법상 거주자·비거주자 모두에 납세의무 있음.
- 연결법인 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.



제3조의 요약

-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: 각 사업연도의 소득. 청산소득에 법인세 부과
- ○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: 각 사업연도의 소득만 법인세 과세되고 청산소득 은 비과세
- ○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분야로만 한정함(수익사업분야: 일반사업수입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주식·출자지분양도수입,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아닌 일반용도 고정자산(분양권, 이용권·회원권 등 포함) 처분수입, 계속적 행위의 수입으로서 채권 등매매차의 등임, 단,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인수정리사업은 제외됨).
- ○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고,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만 과세됨.

	소득구분	각 사업연도 소득	청 산 소 득	부동산 등
법인구분			8 U T F	양도차익 법인세
내국법인	영 리	과세(전세계소득)	과 세	과 세
	비영리	수익사업만 과세	비과세	과 세
외국법인	영 리	국내원천소득 과세	비과세	과 세
	비영리	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 과세	비과세	과 세

○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통합소득에 과세됨.



제4조의 요약

- ○법인세를 부과할 때 소득의 귀속과 거래의 내용에 있어 외관·법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거 부과핽(실질귀속자 과세. 실질내용대로 과세).
- ○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르면 실질귀속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.
- ○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본 법을 적용하여 계산함.
- ○거래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.



제5조의 요약

- ○신탁재산의 소득은 통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·관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정 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흘러가는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 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있다 하더라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, 당해 신탁의 위탁자 및 이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.
- ○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적용을 받은 법인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신탁회사 고유업무상 발생되는 수입 및 지출과는 별도로 구 분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.



제6조의 요약

- ○사업연도는 법령·정관상 정해진 1회계기간으로 하며 최대 1년임.
- ○내국법인의 법령·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대해 따로 규정 없으면 법인설립신고,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.
- ○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 사업연도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- ○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도 소득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.
- ○사업연도 신고해야 할 법인이 신고 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



제7조의 요약

- ○확정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(다음 날부터 3개월)에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- ○신고를 적법기한(3개월내)내에 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.
- ○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1년이 안되더라도 1사업연도로 보며, 해당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며 1개월 이상이면 그대로 하나의 사업연도로 봄.



제8조의 요약

- ○사업연도중 해산: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(파산등기일, 해산일)까지 1사업연도로, 해산등기일 (파산등기일)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(각각 별도 사업연도임)
- ○청산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: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
- 사업연도중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사유의 해산: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(혹은 분할등기일)까지
- ○청산중 법인의 사업계속: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(사실상의 사업계속일)까지가 1사업연도,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가 다시 1사업연도임.
- ○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 전 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봄.
- ○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: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 가지지 않은 날까지(다른 국내사업장 계속 보유하면 사업연도 별도의제 안함. 계속적용)
- ○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발생없음의 신고:당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득없음의 신고일까지



제9조의 요약

- ○내국법인의 납세지: 본점·주사무소소재지(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함)
- ○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: 단체의 사업장소재지, 부동산소재지, 직전년 수 입금액이 큰 부동산소재지, 사업장 없는 단체는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소재지 등임.
- ○외국법인의 납세지:국내사업장 소재지,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·부동산임대, 양도자산 등 자산의 소재지
- ○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: 주된 사업장(최초로 납세지를 정한 곳으로 판단함) 소재지, 2개 이상의 자산 소재하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선택신고한 장소임.
- ○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: 국내법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, 국내소재지 없는 경우는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,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임.



제10조의 요약

- ○납세지 법정 장소가 부적당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, 국세청장이 납세지 지정하고, 이를 납세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.
- ○납세지 지정 사유: 소재지·등기지 불일치, 본점 등과 자산소재지 및 사업장의 분리 등 조 세포탈 소지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장 소재지 판단 불능인 경우, 다수자산소유 외국법인이 신고안한 경우 등임.



제11조의 요약

- ○법인의 납세지 변경시 변경일부터 15일내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(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로 대체 가능함).
- ○납세지 이사·이전변경일부터 15일 이내의 적법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, 적법기한후 변경신고하면 신고한 때부터 납세지로 함.
- ○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


제12조의 요약

법인세는 납세지(적법 납세지, 지정된 납세지, 변경된 납세지)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이 과세한다. 즉 법 규정상 적법한 납세지로 확정된 장소의 관할세무서와 관할지방국 세청장이 과세관할권자이다.